

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

○ 법인·단체명 또는 기관명:

○ 본인은 위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 등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기간 동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위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국세청장
세무서장

귀하

유의사항

위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의 주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.